불건전정보 및 데이터베이스의 사전심사제도

Unsound Information and Database Preliminary Screening System.

- 음란 · 폭력 · 이적표현 등 불온 데이터베이스 규제

신각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Shin, kak-chual./Ministry of Legislation, Legislative Research Officer.

PC통신등의 역기능 문제

요즈음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친근한 벗은 컴퓨터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PC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학습용 또는 오락용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PC통신은 매일매일 생생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고, 알지 못하는 많은 상대방 친구들로부터 유일한 도움말도 들을 수 있어 청소년들의 시야(視野)와 사고(思考)의 범위를 크게 넓혀주고 있다.

많은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설계한 학습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능개발과 학력신장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는 사회전반에 걸쳐 크게 우려하는 부작용 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정보습득(情報習得), 사고력(思考力) · 탐구력(探究力) 신장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PC통신과 관련하여 음란 · 폭력성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음을 지적하고 점차로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이에대한 적절한 규제조치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분야도 최근 지적되고 있는 PC통신과 관련된 부작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음란 · 폭력성 정보의 제공문제

대부분의 청소년은 PC통신의 사설게시판(BBS)을 즐겨 이용한다. 이 게시판에 욕설이나 음란성 정보가 게재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불평, 불만이나 필요없는 잡담, 이상한 말투,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가 수록되어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

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본다면, 중학교 여학생이 PC통신을 통하여 욕설을 듣고 자살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92. 6. 16 중앙일보) 또한 중학교 2학년 남자학생이 자신의 공부방에 설치된 PC통신 사설 전자게시판(BBS)에서 남녀의 성행위를 그대로 묘사한 화면을 발견하고 크게 충격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92. 7. 2 한겨레신문) 그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상업적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음란프로그램을 전송하고 돈을 받아 챙기다가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92. 6. 28 조선일보)

이와같이 PC통신의 사설게시판에 띄워지는 정보는 부정기적으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정보가 있는가 하면, 계획적으로 음란·오락성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도 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보내용에 대하여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나쁜 방향으로 빠져들게 하는 악덕 정보업자를 제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 모두의 바램이다.

이적표현 등 불온정보의 제공

PC통신 전자게시판에 수록된 글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언론 등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93. 11. 19 동아일보)

보도내용의 개요를 살펴보면 데이콤의 통신망인 천리안에 사노맹이란 이적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수록한 사건이다.

「현대철학동호회」회장인 김ㅇㅇ씨는 천리안의 나도한마디 코너에 「혁명의 사회주의 노동자의 정치적 입장, 사노맹 중앙재건위원회의 입장, 국제사회주의자의 입장」등 4건의 불온 정보를 수록한 바 있다.

위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북한공산당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 수록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이와같은 이적표현물이 PC통신에 수록되어 분별력이 아직 미숙한 청소년에게 사상적으로 오염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 불법복제물 유통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불온정보의 유통, 음란·폭력·외설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의 전파 등 국가·사회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보가 수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몽땅 빼앗아 가는 파렴치한 행위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래아 한글 2.0프로그램(市價 27만원)을 PC서브와 하이텔을 이용해 불법복제하고 10만원씩 받아 챙기는 악덕 상행위(商行爲)가 발견 되었다.(92. 10. 18 한겨레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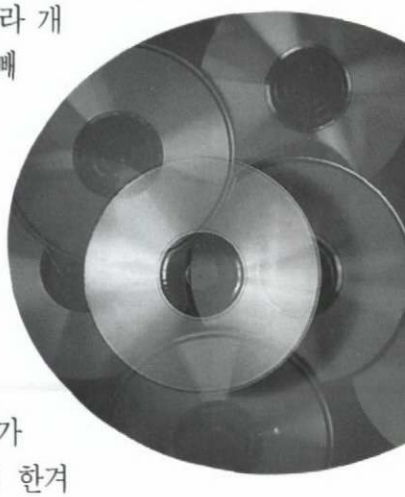

컴퓨터프로그램 제작회사에서 많은 노력과 자금을 들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중 판매에 들어가자 마자 불과 1개월도 채 안돼 복제프로그램 소스가 PC통신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유통된다고 한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을 훔치는 절도행위나 다름없다. 또한 PC통신매체를 통하여 프로그램복제소스가 유통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량 확산되어 그 피

해 규모도 엄청나다. 프로그램개발 회사는 결국 도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풍토에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은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고 언론등에서 지적하고 있다.(93. 5. 19 조선일보)

컴퓨터바이러스 등 유포

PC통신으로 인한 또하나의 부작용은 악성 바이러스의 유포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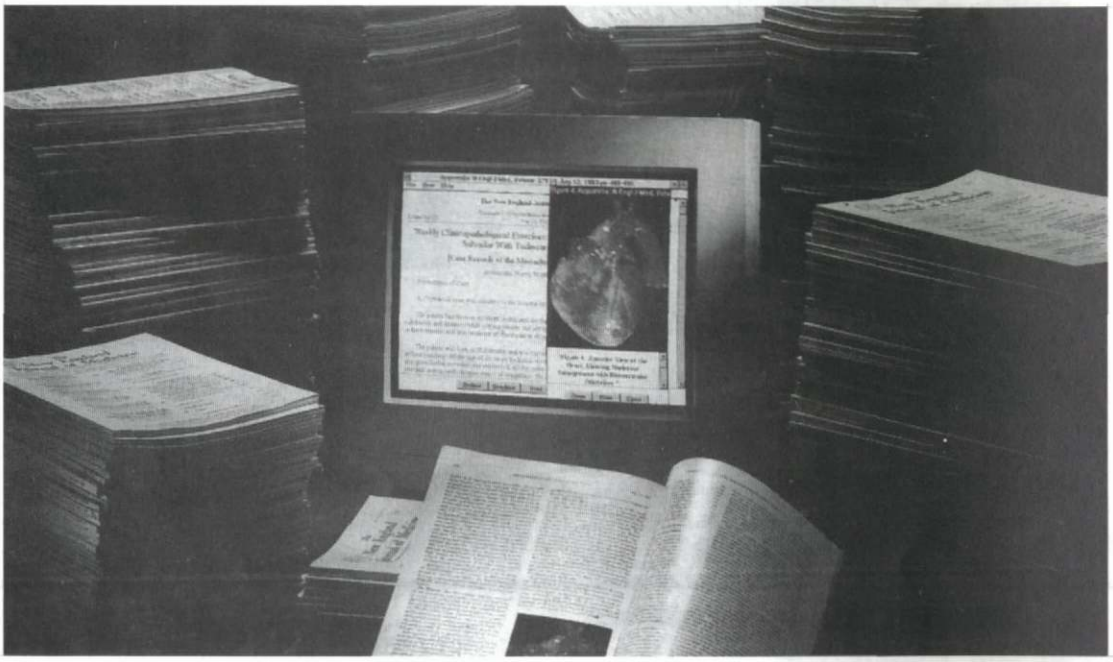

국제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유입된 컴퓨터바이러스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악성 바이러스를 오락 또는 음란프로그램에 섞어 넣은 다음, 이를 복사하여 옮겨 쓰도록 PC통신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공개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받아서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컴퓨터바이러스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92. 3. 5 동아일보)

그 밖에 사생활비밀침해,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비방하거나 매도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PC통신과 불건전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통신의 자유와 비밀보장 보다는 이용자의 권리가 더욱 중요하므로 강력하게 법적·제도적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적규제 장치의 마련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①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③ 기타 범죄행위 등을 금지시키고 있고 제25조에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통신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전산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은 구체적으로 불온통신 등에 관한 심사·규제 등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따라서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95. 1. 5 법률제4903호)하면서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온통신 등을 심사·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계·법조계·이용자 단체 및 정보통신 관련업계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중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②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등이다.

이 법률의 규정중 정보에 대한 사전심의가 통신의 자유와 비밀침해로서 헌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의에 따라,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특정하는 정보에 한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95. 4. 6 개정)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위의 규정으로 보아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이외의 일반 통신사업자 등이나 이용회원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거의 심의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겠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 및 건의, 불건전정보통신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을 행할 수 있다.

불건전 정보의 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칙과 심의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에서 제정한 정보의 심의 기준은 불건전정보의 범위설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기준 데이터베이스사업자 등은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하겠기에 상세히 소개한다.

(1) 국가의 질서유지 :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규정17조)

이 기준은 공공의 안녕질서 파괴, 반국가적인 이적표현물의 유통 등이 해당되며 국가보안법, 형법 등에도 저촉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우선적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심사·규제한다.

(2) 인권과 명예의 존중 : 누구든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 모략 혹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규정 18조)

(3) 인명존중 : 누구든지 살인·자살·고문·폭력·학대·인신매매 등 인명경시내용을 미화하거나 혹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

다.(규정 19조)

최근에 PC통신에서 폭력성 장면 살인·고문 등 잔혹한 행위 등의 정보를 오락성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유통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주로 정보이용자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임을 감안하여 이러한 자극적인 정보는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한다.

(4)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기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 혹은 범죄행위의 모방이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규정 20조)

악질적인 해커 행위, 불법복제프로그램유통, 바이러스의 전파 등도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

(5) 사생활의 보호 : 누구든지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개인의 이름, 주소 등을 사용할 수 없다.(규정 21조)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약칭)의 시행(95. 1. 7)으로 법률위반 사항에 해당되나 특히 PC통신에서 사생활의 비밀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개인의 신상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도 있다.

(6) 바른언어의 사용 : 누구든지 국민의 바른 언어사용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정 22조)

PC통신을 이용하는 회원·이용자인 청소년 학생들에게 특히 주의할 사항이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은어·속어 등의 사용이 해당된다.

(7) 위화감조성 내용 배제 : 누구든지 지역간 혹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국민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규정 24조)

특히 지역간의 위화감 조성은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인 지역감정 문제에 또 하나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해당된다.

(8) 비과학적인 생활태도 조장 : 누구든지 미신 또는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규정 26조)

컴퓨터 사주풀이, 점, 토정비결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오락성과 미신성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9) 신앙의 자유 : 누구든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규정 27조)

신앙의 자유보장은 헌법상 인정하는 국민의 기본적권리에 해당된다.

특정 종교·종파의 비방, 모독행위는 국민의 단결을 해치는 행위이다.

(10) 의료행위 및 의약품 : 누구든지 과학적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나 약품내용 혹은 설문을 통한 진단, 처방 등의 내용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흥미, 불안, 초조, 공포 등을 일으키어 증상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규정 28조)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약사법 등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의 요건도 된다. 건강정보 또는 의료정보라는 미명아래 오히려 병을 일으키게 하는 역기능을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

PC통신을 통한 「원격의료서비스」의 경우는

인가된 병원 또는 의사만 가능하다.

(11) 광고행위 : 누구든지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혹은 간접광고의 효과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규정 29조)

예컨대, 선거에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또한 특정제품 또는 기업이 유리하게 PC통신을 통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전·광고하는 행위도 있다.

(12) 타인의 권리보호 :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정보의 이용시 정당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상표권·의장권 등 무단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규정 32조)

대표적인 사례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소스의 유통이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사설게시판에 띄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불건전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위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불건전한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시정요구를 제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는 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 과징금(2천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도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장관이 불온정보 단속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법 71조)

맺음말 : 불건전정보의 신고 협조 등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사업자, 데이터베이스사업자 등은 설사 자기가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운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용회원들이 불건전 정보를 게재할 경우, 즉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동위원회에서「불건전정보통신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문화 하였다.(법 53조의 2, 3항 4호)

현실적으로 정보통신사업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운영자 등은 매일매일 수만건씩 발생하는 정보들을 일일이 사전에 확인한다(모니터링)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매일 1회 또는 2일에 1회정도 일정기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확인·점검하는 팀을 구성운영해야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의 역기능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들의 불건전 퇴치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이용자들의 경우도「정보윤리강령」(앞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제정·공포할 예정 임)을 준수하여 건전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 데이터베이스 사업자 등의 노력 보다는 정보이용자의 협조가 더욱 중요하다.

모든 정보이용자들이「불건전정보」를 발견 즉시「불건전정보통신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정신 즉, 모두「모니터」가 되어 불건전정보의 퇴치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DC